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전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2. 급여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치매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자

3.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며, 입소후 등급의 변동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 발생시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은 지자체의 지침에 따른 그 보호기간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제10조】

■ 입소 보증금 : 없음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최근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비급여에 관한 변동은 협의 하에 가능하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 한다.

2025년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내역(일반)

【기준 : 30일 / 단위 : 원】

급여비용 안내 (*30일 기준*)									
분류	인력 배치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포함)		
		총급여액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간식비포함)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2.3:1	2,580,900	516,180	309,700	206,470	498,000	1,014,180	807,700	704,470
	2.1:1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498,000	1,040,700	823,620	715,080
2등급	2.3:1	2,394,300	478,860	287,310	191,540	498,000	976,860	785,310	689,540
	2.1:1	2,517,300	503,460	302,070	201,380	498,000	1,001,460	800,070	699,380
3,4,5 등급	2.3:1	2,260,800	452,160	271,290	180,860	498,000	950,160	769,290	678,860
	2.1:1	2,377,200	475,440	285,260	190,170	498,000	973,440	783,260	688,170

2025년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내역(치매전담:가형1실,가형2실)

【기준 : 30일 / 단위 : 원】

등급	1일 수가	일수	본인부담금(1)			식대 (2)	상급병실 (3)	월 총 납 부 금 액 (1)+(2)+(3)		
			일반(20%)	경감(12%)	경감(8%)			일반(20%)	경감(12%)	경감(8%)
2등급	94,220	30일	565,320	339,190	226,120	498,000	300,000	1,363,320	1,137,190	1,024,120
3~5등급	86,880		521,280	312,760	208,510			1,319,280	1,110,760	1,006,510

비급여

- ▶ 상급침실(1일) : 1인실 20,000원, 2인실 10,000원
- ▶ 식비(간식비포함) 1일 16,600원 (1식 4,700원 간식 1일 2회 2,500원)
- ▶ 기타비급여 : 초탁진료비가정간호비 병원진료비(해당 시 청구)
- ※ 상급병실,기타비급여이용일수에 따라 월 비용부담이 상이할 수 있음.

5. 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변경으로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③ 이용료 변경시, 공단에 통보 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유선상 혹은 공지문을 우편 발송하여, 재계약 또는 보조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단, 비급여 동결시에는 재계약 없이 안내서 통보만으로 할 수 있다.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제14조】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 운영규정 제10조에서 명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비밀보장 : 입소어르신인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 기록 및 공개 : 입소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입소어르신과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 입소어르신인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입소어르신이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7. 계약자,수혜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 서비스이용자-입소자(갑)와 서비스제공자(을), 그리고 보호자(병)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입소자(갑)의 의무 및 권리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 ⑤ 이용자로써,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가진다 (보호받을 권리, 의료기관 이용 요구 권리, 기타 다른 입소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2.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및 권리

-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 ⑥ 입소자의 자부담 장기간 연체시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통보, 퇴소 처리의 권리

3. 신원인수인 및 보호자(병)의 의무 및 권리

-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②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 ③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⑥ 계약의 해지 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 ⑦ 보호자로서, 이용자의 시설내 권익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8. 계약의 해제【제12조】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 ③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④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혹은 보건자로서 다른 입소자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 ⑤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⑥ 장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⑦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인지/정서적 문제,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위협이나, 지장을 줄 때
- ⑨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 ⑩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 사항 【제18조】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혹은 그 보호자중 대표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혹은 그 보호자 대표)은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